

학생서비스센터 규정

(제정 1997.10.2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서비스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센터는 학생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
2. 교육 및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
3.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
4.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
5. 그 밖에 교육 및 행정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

② 센터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증명 발급(교직원, 학부 및 대학원)
2. 각종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
3. 유실물센터 운영
4. 학생민원사항 모니터링
5. 학생증 관련 업무
6. 그 밖의 민원서비스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서비스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간사는 센터 담당 직원이 된다.

⑥ 위원회 산하에 학생서비스개선분과와 교육프로그램성과관리분과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총괄한다.

제5조(분과위원회) ① 학생서비스개선분과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서비스 만족도 분석 계획
2. 서비스 만족도 분석 방법
3.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 및 정책 방안

② 교육프로그램성과관리분과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 프로그램 수행 성과
2.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각 분과의 2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민원사무) 민원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접수·처리하거나 정보제공 및 특별서비스 등을 행함을 말하며 그 처리에 관한 세부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증명발급(성적증명서 등)
2. 서류접수 처리(휴학, 복학, 재입학, 자퇴, 학적부 변경신청서)
3. 정보제공(수강신청내역, 성적열람 등)
4. 특별서비스(정보복사, FAX수신 등)
5. 상담

제8조(민원처리의 원칙) ① 센터는 제출 부서, 처리기간, 구비서류, 처리기준,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센터에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민원 사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,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.

③ 센터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, 관계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자가 직접 행하도록 하며,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민원 사항의 접수 방법) ①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·처리할 수 있다.

②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, 전신,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로 접수·처리할 수 있다.

③ 센터는 구술, 전화, 우편, 전신,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로 접수·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서비스센터 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.

④ 소정 양식에 의하지 않는 민원사항은 민원사무 처리부에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처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